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411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11. 15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독산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사인력 보강 및 2050 탄소중립의 전방위적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를 1,204명에서 1,208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
- 집행기관의 정원: 1,172명 → 1,176명 (증4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
- 총 계: 1,204명 → 1,208명 (증 4)

- 일반 직 계: 1,197명 → 1,201명 (증 4)

- 일반 5급 계: 53명 → 54명 (증 1)

- 6급 이하 계: 1,133명 → 1,136명 (증 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없음

다. 협의기관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

라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- 2) 입법예고: 2023. 10. 11. ~ 2023. 10. 31. (20일 이상) 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4) 규제사전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5) 부패영향평가: 제외대상(민원감사담당관)
- 6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가족정책과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204명”을 “1,20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172명”을 “1,17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직렬직급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
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 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208	1,176			32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201	1,171			30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4	32	10	10	2
6급 이하 계	1,136	1,109			27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6	4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1,204명</u>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1,172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colspan="3">집행기관</th> <th rowspan="2">의회 사무기구</th> </tr> <tr> <th>본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204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72</u></td> <td>32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197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67</u>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53</u></td> <td>32</td> <td><u>9</u></td> <td>10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1,133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06</u></td> <td>27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3">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6</td> <td colspan="3">4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5</td> <td colspan="3">3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본청	보건소	동	총 계	<u>1,204</u>	<u>1,172</u>			32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197</u>	<u>1,167</u>			30	3급	1	1				4급	8	6	1		1	5급	<u>53</u>	32	<u>9</u>	10	2	6급 이하	<u>1,133</u>	<u>1,106</u>			27	전문경력관	2	2				별정직 계	6	4			2	5급 상당	1	1				6급 상당 이하	5	3			2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208명</u>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,176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기관별 직급별</th> <th rowspan="2">총계</th> <th colspan="3">집행기관</th> <th rowspan="2">의회 사무기구</th> </tr> <tr> <th>본청</th> <th>보건소</th> <th>동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<u>1,208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76</u></td> <td>32</td> </tr> <tr> <td>정 무 직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<u>1,201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71</u>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5급</td> <td><u>54</u></td> <td>32</td> <td><u>10</u></td> <td>10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6급 이하</td> <td><u>1,136</u></td> <td colspan="3"><u>1,109</u></td> <td>27</td> </tr> <tr> <td>전문경력관</td> <td>2</td> <td colspan="3">2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별정직 계</td> <td>6</td> <td colspan="3">4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5급 상당</td> <td>1</td> <td colspan="3">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급 상당 이하</td> <td>5</td> <td colspan="3">3</td> <td>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본청	보건소	동	총 계	<u>1,208</u>	<u>1,176</u>			32	정 무 직	1	1				일반직 계	<u>1,201</u>	<u>1,171</u>			30	3급	1	1				4급	8	6	1		1	5급	<u>54</u>	32	<u>10</u>	10	2	6급 이하	<u>1,136</u>	<u>1,109</u>			27	전문경력관	2	2				별정직 계	6	4			2	5급 상당	1	1				6급 상당 이하	5	3			2
기관별 직급별		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본청	보건소	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204</u>	<u>1,172</u>		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197</u>	<u>1,167</u>		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53</u>	32	<u>9</u>	10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133</u>	<u>1,106</u>			2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6	4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본청	보건소	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<u>1,208</u>	<u>1,176</u>		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 무 직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<u>1,201</u>	<u>1,171</u>		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8	6	1	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	<u>54</u>	32	<u>10</u>	10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이하	<u>1,136</u>	<u>1,109</u>			2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경력관	2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별정직 계	6	4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 상당	1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발생(4명 순증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직급별 비율 :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[별표 2]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름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 문 경력관
책정기준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개정 후 비율	0.75%	4.50%	19.40%	30.56%	29.39%	15.24%	0.17%

- 인건비 기준액

구분	호봉 기준	22년 기준액	증원
5급(임기제)	연봉 하한액	5,312천 원/월	+1명
6급	23호봉	4,183천 원/월	+1명
7급	13호봉	3,134천 원/월	+1명
8급	7호봉	2,305천 원/월	+1명

※ ① 기본급+②고정수당(정액급식비,대민활동비,명절휴가비,정근수당,직급보조비)+③추가수당(가족수당,시간외수당,연차수당,특수근무수당)+④복지포인트

- 임금인상율 : 연1.7%적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○ 인건비		204,527	208,044	211,540	215,136	218,794	1,058,004
	소계		204,527	208,044	211,540	215,136	218,794	1,058,004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-	-	-	-	-	
시비								
구비	자체재원		204,527	208,044	211,540	215,136	218,794	1,058,004
	의존재원							
	지방채 등							
민간								
기타								
합계			204,527	208,044	211,540	215,136	218,794	1,058,004

5. 작성자 : 행정지원과 인사팀 김정관 (2627-1012)

현행조례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,204명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: 1,172명
2.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32명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99% 이상	1% 이내

비 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,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1%이내	30%이내	10%이상	1%이내

2. 별정직 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 이하
비 율	35% 이내	35% 이내	30% 이상

비 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(제4조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집행기관			의회 사무기구
		본청	보건소	동	
총 계	1,204	1,172			32
정 무 직	1	1			
일반직 계	1,197	1,167			30
3급	1	1			
4급	8	6	1		1
5급	53	32	9	10	2
6급 이하 계	1,133	1,106			27
전문경력관 계	2	2			
별정직 계	6	4			2
5급 상당	1	1			
6급 상당 이하	5	3			2

관계 법령

1.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- 2. 삭제 <2020. 3. 10.>
-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-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-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